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추가입주자 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21)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청약 신청은 **접수시작일 '22.12.02(금) 10:00 ~ 12.06(화) 16:00** 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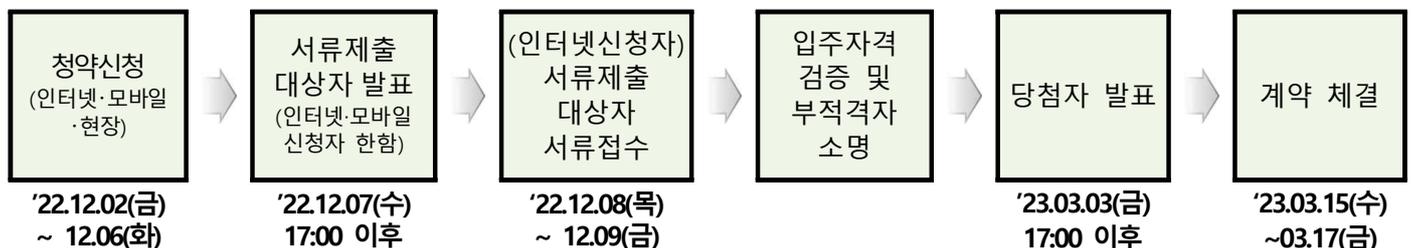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소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600-1004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21(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4쪽 4.신청자격 확인)  
**※ 만65세 이상 → 1957.11.21 이전(포함) 출생자**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3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100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9.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금회 모집호수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입주자	예비자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6	60	53	20	26.99	16.8478	19.6628	-	63.5006	101동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개별(지역) 난방	'23.04월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6	「가」군	2,366,000	118,300	2,247,700	47,070	(+) 3,000,000	5,366,000	32,070
						(-) 1,000,000	1,366,000	49,150
	「나」군	9,246,000	462,300	8,783,700	93,990	(+) 11,000,000	20,246,000	38,990
						(-) 6,000,000	3,246,000	106,490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①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 ②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③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p>▶PC(인터넷), 모바일 접수 '22.12.02(금) 10:00부터 ~ 12.06(화) 16:00까지</p> <p>※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p> <p>▶현장접수 '22.12.06(화)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p>	<p>'22.12.07(수) 17:00 이후</p> <p>(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p>	<p>▶온라인 서류접수 '22.12.08(목) ~ 12.09(금) 10:00~16:00</p> <p>▶등기우편 접수 '22.12.09(금) 우체국소인분까지 접수가능 (일반우편 접수불가)</p>	<p>'23.03.03(금)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 (1661-7700)</p> <p>※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p>	<p>▶전자 계약 '23.03.15(수) 10:00 ~ '23.03.17(금) 16:00</p> <p>▶현장 계약 '23.03.16(목)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계약장소 개별 안내예정</p> <p>예비입주자는 공사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계약 안내</p>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6. 신청방법 참조) 가능합니다.
- \* 현장접수 장소 : 영암읍 농업인상담소(영암읍 남주로 133, 영암읍사무소 앞)
- \* 현장접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되도록 인터넷(PC)으로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함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사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1.)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 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p><b>무주택</b></p>	<p><b>주택 또는 분양권등*</b>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p> <p>※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b>세대 구성원</b></p>	<p>■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231 1355 1449 1751"> <thead> <tr> <th>세대구성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31 1841 1449 2101"> <tbody> <tr> <td><b>외국인 배우자</b></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r> <tr> <td><b>외국인 직계존·비속</b></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body> </table>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b>외국인 배우자</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b>외국인 직계존·비속</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b>외국인 배우자</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b>외국인 직계존·비속</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li> <li>■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이하	2,890,902원이하
	2인가구	2,906,622원이하	3,875,496원이하
	3인가구	3,209,283원이하	4,492,996원이하
	4인가구	3,600,405원이하	5,040,566원이하
	5인가구	3,663,036원이하	5,128,250원이하
6인가구	3,889,913원이하	5,445,878원이하	
7인가구	4,116,789원이하	5,763,505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p><b>1. 자산기준 적용 신분</b>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p> <p><b>2. 총자산 기준</b>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b>24,200만원 이하</b></p> <p><b>3. 자동차 기준</b>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b>3,557만원 이하</b></p> <p>*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p>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li> </ul>

	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b>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b>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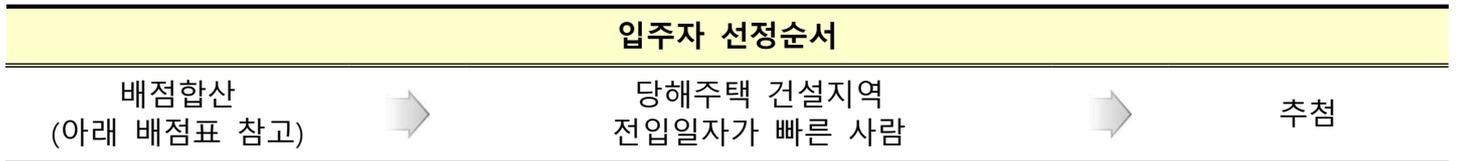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5.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① 장기요양등급	3등급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	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	* 영암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③ 인터넷신청



####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3.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접수시작일 '22.12.02(금) 10:00 ~ 12.06(화) 16:00이며,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 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영암군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 설치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2.12.07(수) 17:00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

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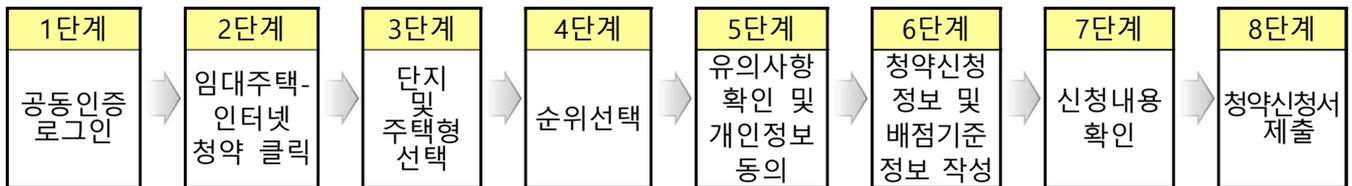
#### 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http://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 현장방문 신청방법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현장접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분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대행**하오니 필히 마스크 착용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신청자는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 신청일과 현장 신청일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공급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등 청약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 현장방문 신청 장소 (변경시 추후 별도안내)

- 신청장소 : **영암읍 농업인상담소(영암읍사무소 앞)**

## 6-1.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 서류제출 방법

-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등기우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서류 제출 기한 : 2022.12.0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 가능 (일반우편 접수 불가)
- 우편 서류 제출 시, 2022.12.0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되오니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이후 접수분은 탈락처리됩니다.
- 등기우편 접수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부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담당자 앞(우:61947)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21)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2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구분

- 1)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 2) 현장 신청자 : 신청접수 시점에 제출

■ 공통 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공사양식 (각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li> <li>•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주민등록표등본 (13자리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13자리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3자리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li> </ul>	1통
기타서류	<p>&lt; 해당자만 제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요건(순위 구분) 등을 위해 반드시 신청 전 사전확인·준비 요망]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 / 행정복지센터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li> <li>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li> </ol>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li> <li>② 본인(신청자) 도장</li> <li>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li> </ol>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li> <li>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li> <li>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li> </ol>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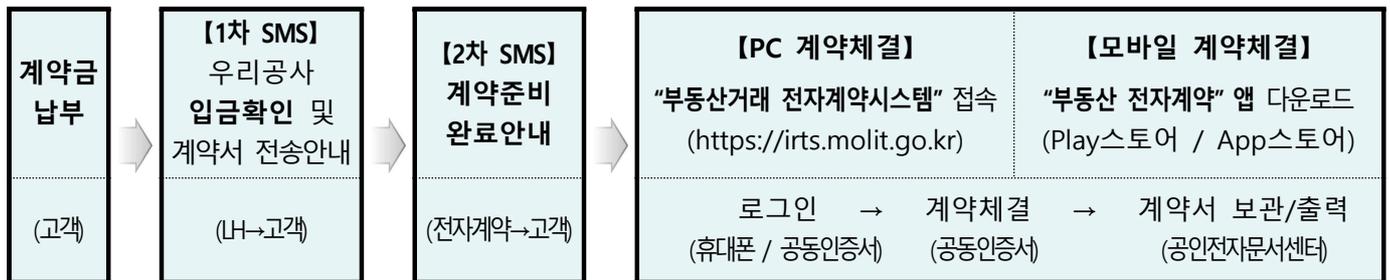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3.03(금) 17: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공사 임대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계약안내

####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3.03.15.(수) 10:00 ~ 03.17.(금)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계약기간 : 2023.03.16.(목)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계약장소 : 추후 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li> <li>•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li> <li>•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li> <li>※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li>•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li> </ul>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li> </ul>

구분	유의사항
	<p>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b>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b>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b>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b></li> </ul>
입주자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b>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b></li> </ul>
지구 및 단지여건	<p>□ 지구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지구(군내) 주변에 영암군청, 학교, 영암경찰서, 119안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li> <li>■ 임대주택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동측에는 농경지 및 인근주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서측에는 영암군공용 버스터미널, 영암경찰서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에는 농경지, 월출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영암읍면사무소, 청송드림빌1차아파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외 국도13호선, 지방도 819호선 등이 인접하여 접근성 양호하고 남측 월출산이 있어 우수한 자연환경 보유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차량 출입구는 북측 정면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보행 출입구는 북측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울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 가로등 등</li> <li>- (단지내 시설물)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옥상정원, 실버복지관, 복지관사무실, 자전거보관서 2개소, 우편함, 무인택배함, 음식물처리시설 등</li> </ul> </li> <li>■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li> <li>■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측벽에 CI(LH)등의 로고표시 및 영암군 색채가 반영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총35대(아파트 20대, 부대복리시설 15대) 단지 내 배치예정인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지하층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 복지관 옥상에 흡출기 및 에어컨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옥상 에어컨 실외기는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저층 세대는 인근 도로 등에 의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방법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다목적강동,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세대 원격검침은 2종 (전기, 수도)임</li> </ul>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li> </ul>

구분	유의사항
	<p>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폭이 협소하므로 세탁기 및 건조기를 준비하실 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방 취사 기구는 미 설치 되었으며 연료는 도시가스로 준비하실 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상부에는 창고선반이 설치됩니다.</li> <li>■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li> <li>■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는 LH가 입주자를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b>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b></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 및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li> </ul>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BL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경일건설(주) (주)한라공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주)진전기엔지니어링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청각장애인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청각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청각장애인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2-360-3366(주택 사업1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4.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리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